**<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대한 결정**

2013년 8월 30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 통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제4조 1항, 2항을 병합시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경영 활동 중 해당 상품 및 서비스의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할 경우에는 상표국에 상품 상표 등록을 출원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2. 제6조를 “법률, 행정법규에서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상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표 등록을 출원해야 하며 등록 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판매하지 못한다.”로 수정한다.

3. 제7조에 “상표 등록 출원 및 상표 사용 시 반드시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를 신규 추가하여 제1항으로 한다.

4. 제8조를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는 그 어떤 문자, 도안, 부호, 수치, 삼차원 표식 및 칼라조합, 오디오 및 상기 요소의 조합을 포함한 표식은 모두 상표등록을 출원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5. 제10조 1항의 (1)~(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중화인민공화국 국명, 국기, 국장, 국가, 군기, 군대 휘장, 군가, 훈장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또는 중앙 국가기관의 명칭, 표식, 소재지 특정 지점의 명칭 또는 상징성 건축물의 명칭, 도안과 동일한 것

（2）외국의 국명, 국기, 국장, 군기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단 당해 국가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것은 제외

(3) 정부간 국제조직의 명칭, 깃발, 휘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단 당해 조직이 동의하였거나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지 않는 것은 제외”

제1항 (7)호를 “사기성을 띠었으며 상품의 품질 등 특성 혹은 생산지에 대해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는 것”로 수정한다.

6. 제11조 1항 (2)호의 “仅仅”을 “仅”으로 수정한다.

제1항 (3)호를 “기타 뚜렷한 특징이 결여한 것”으로 수정한다.

7. 제13조에 “관련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는 상표권자가 해당 권익이 침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법에 근거하여 유명 상표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 제1항으로 한다

8.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유명상표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상표안건 처리시 인정이 필요한 사실에 대해 인정을 해야 한다. 유명상표의 인정은 하기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1）당해 상표에 대한 관련 공중의 숙지정도

（2）당해 상표의 연속 사용기간

（3）당해 상표의 임의의 홍보 지속기간, 정도 및 지리범위

（4）당해 상표가 유명상표로서 보호를 받은 기록

（5）당해 유명상표의 기타 요소.

상표등록 심사,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상표 위법 안건 처리 과정 중 당사자가 본 법 제13조 규정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상표국은 안건 심사 및 처리 수요에 따라 유명상표 상황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

상표 쟁의 처리 과정 중 당사자가 본 법 제13조 규정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상표평의위원회는 안건 처리의 수요에 따라 유명상표 상황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

상표 민사 및 행정안건을 심사 처리하는 과정중 당사자가 본 법 제13조 규정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인민법원은 안건 심사처리 수요에 따라 유명상표 상황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

생산 경영자는 “유명상표” 문구를 상품 및 상품 포장 또는 용기, 광고 홍보, 전시 또는 기타 상업활동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제15조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여 제2항으로 한다. “동일한 종류의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 신청을 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경우, 신청인이 당해 타인과 전항 규정이외의 계약, 업무거래관계 또는 기타 관계가 있어 타인 상표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당해 타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10.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상표등록 출원 또는 기타 상표 관련 사무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1. 다음의 내용을 신규 추가하여 제19조로 한다. “상표대리기구는 성실 신용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피대리인의 위탁에 근거하여 상표등록 출원 또는 기타 상표 관련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대리 과정 중 알게 된 피대리인의 상업비밀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의뢰인이 등록 출원한 상표가 본 법에서 규정한 등록 불가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상표대리기구는 반드시 명확히 의뢰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상표대리기구는 의뢰인이 등록 출원한 상표가 본 법 제15조 및 제32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부합된다는 것을 알거나 응당 알아야 하는 경우, 당해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상표대리기구는 대리하는 서비스에 대해 상표등록을 출원할 수 있는 외 기타 상표 등록을 출원해서는 아니 된다.”

12. 다음의 내용을 신규 추가하여 제20조로 한다. “상표대리 산업조직은 정관 규정에 따라 회원 가입 조건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고 산업 자율규범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표대리 산업조직은 가입한 회원 및 회원 징계상황에 대해 즉시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13. 다음의 내용을 신규 추가하여 제21조로 한다. “상표 국제등록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이 확립한 제도를 준수해야 하고 구체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14. 제19조, 제20조를 병합시켜 제22조로 한다. “상표등록 출원인은 소정 상품 분류표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종류와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등록 출원인은 한번의 신청을 통해 부동한 종류의 상품에 대해 동일 상표를 등록 출원할 수 있다.

상표등록 출원 등 관련 문서는 서면 또는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다.”

15.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23조로 한다. “등록상표가 지정 사용범위 이외의 상품에 대해 상표 전용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별도로 등록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제23조를 제41조로 변경한다.

17.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28조로 한다.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 상표국은 상표등록 출원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내에 초보 심사를 완료하고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할 경우, 초보 심사결과를 공고한다.”

18. 다음의 내용을 신규 추가하여 제29조로 한다. “심사과정 중 상표국에서 상표 등록 출원 내용에 대한 설명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설명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 설명 또는 수정을 아니한 경우 상표국이 심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33조로 한다. “초보 심사를 한 상표에 대하여는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선행권리자, 이해관계자가 본 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누구든지 본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두 상표국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공고기간이 만료되어도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등록을 허가하고 상표등록증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이를 공고한다.”

20. 제31조를 제32조로 변경한다.

21.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34조로 한다. “출원을 기각하고 이를 공고하지 아니한 상표에 대하여 상표국은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등록 출원인이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표평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평의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내에 결정하는 동시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일정 연기가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22.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35조로 한다. “초보 심사를 하여 공고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상표국은 이의 신청인과 출원인의 사실과 이유 진술을 청취하고 조사하여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조사 확인 후 공고한 날로부터 12개월내에 등록 비준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인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일정 연기가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상표국이 등록을 허가한 경우 상표등록증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이를 공고한다. 이의 신청인이 불복할 경우에는 본 법 제44조, 제45조 규정에 근거하여 상표평의위원회에 당해 등록상표 무효 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상표국이 등록을 불허하여 출원인이 불복할 경우,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상표평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평의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내에 재정하는 동시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인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일정 연기가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출원인이 상표평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의 신청인에게 제3자로 소송에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평의위원회가 전항 규정에 따라 재심을 진행하는 과정에 포함된 우선 권리의 확정이 인민법원에서 현재 심사하고 있거나 행정기관이 현재 처리하는 다른 한 안건의 결과를 근거로 하는 경우,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 원인 소멸 후 응당 심사 절차를 회복하여야 한다.”

23.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36조로 한다. “법정기간이 만료되어도 당사자가 상표국의 출원 기각 결정, 등록 불허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상표평의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해 인민법원에 제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 출원 기각 결정, 등록 불허 결정 또는 재심 결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심사 결과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등록을 허가할 경우, 상표등록 출원인이 상표전용권을 취득하는 시간은 초보 심사 공고를 발표한 후 3개월이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당해 상표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등록 허가 결정을 하기전까지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당해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식을 사용한 행위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단, 동 사용자의 악의로 인하여 상표 등록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배상을 진행해야 한다.”

24. 제4장의 제목을 “등록상표의 갱신, 양도 및 사용허가”로 수정한다.

25.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40조로 한다. “등록상표를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 12개월 내에 갱신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신청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6개월의 연장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매회 갱신 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지난번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연장기간이 만료되어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를 말소한다.

상표국은 갱신 등록 허가한 상표에 대해 공고한다.”

26. 제39조를 제42조로 변경하고, 다음의 내용을 신규 추가하여 제2항, 제3항으로 한다.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상표등록자가 동일 종류 상품에 등록한 유사한 상표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한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도 같이 양도해야 한다.

혼동을 초래하기 쉽거나 또는 기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도에 대해 상표국은 비준을 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이유를 설명한다.”

27. 제40조를 제43조로 변경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타인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할 경우, 허가인은 상표사용 허가계약을 상표국에 보고하여 비안하여야 하며 상표국에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상표사용 허가에 대해 비안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해서는 아니 된다.”

28. 제5장의 제목을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로 수정한다.

29. 제41조,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44조, 제45조로 한다.

“제44조 이미 등록한 상표가 본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사기성 수단으로, 기타 부당 수단으로 등록 허가를 취득한 경우, 상표국은 당해 등록상표가 무효함을 선고한다.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은 상표평의위원회에 당해 등록상표의 무효 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상표국은 등록상표 무효 선고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국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표평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평의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내에 결정하는 동시에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일정 연기가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이 상표평의위원회에 당해 등록상표의 무효 선고를 신청할 경우, 상표평의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후 서면으로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기한내 답변을 제출한다. 상표평의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내에 등록상표 유지 또는 등록상표 무효 선고를 재정하는 동시에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일정 연기가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 재정절차의 상대편 당사자에게 제3자로 소송에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이미 등록한 상표가 본 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표가 등록된 날로부터 5년내 선행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상표평의위원회에 당해 등록상표의 무효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악의적으로 등록한 경우 유명상표 소유자는 5년의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표평의위원회는 등록상표 무효신고 신청을 접수한 후 서면으로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기한내에 답변을 제출한다. 상표평의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내에 등록상표 유지 또는 등록상표 무효 선고를 결정하며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일정 연기가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 재정절차의 상대편 당사자에게 제3자로 소송에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평의위원회가 전항 규정에 근거하여 무효선고 청구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포함된 우선 권리의 확정이 인민법원에서 현재 심사하고 있거나 행정기관이 현재 처리하는 다른 한 안건의 결과를 근거로 하는 경우,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 원인 소멸 후 응당 심사 절차를 회복하여야 한다.”

30. 제42조를 삭제한다.

31. 다음의 내용을 신규 추가하여 제46조로 한다. “법정기간이 만료되어도 당사자가 상표국의 등록상표 무효 선고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상표평의위원회의 재심 결정, 등록상표 유지 또는 등록상표 무효 재정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제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 상표국의 결정, 상표평의위원회의 재심 결정, 재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32. 다음의 내용을 신규 추가하여 제47조로 한다. “본 법 제44조, 제45조 규정에 근거하여 무효를 선고 받은 등록상표는 상표국에서 공고하며 당해 등록상표 전용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등록상표 무효선고 결정 또는 재정 관련하여 무효 선고 이전에 인민법원이 진행 및 집행한 상표 권리 침해 안건의 판결, 재정, 조정서와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실행 및 집행한 상표 권리 침해 안건의 처리 결정, 또는 이미 이행한 상표 양도, 사용허가 계약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단, 상표등록자의 악의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

전항 규정에 근거하여 상표 권리 침해 배상금, 상표양도금, 상표사용비를 반환하지 않는것이 명백히 공평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응당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반환해야 한다.”

33. 다음의 내용을 신규 추가하여 제48조로 한다. “본 법에서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를 상품, 상품 포장 또는 용기 및 상품거래문서, 또는 광고 홍보, 전시 및 기타 상업활동에 사용함을 말하며 상품 출처를 분별하는데 쓰이는 행위를 뜻한다.”

34.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49조로 한다. “상표등록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과정 중 등록상표를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등록인 명칭,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간이 만료되어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상표국은 그 동록상표를 취소한다.

등록상표가 당해 지정 사용 상품의 통용 명칭으로 되었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연속 3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은 상표국에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국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내에 결정해야 하며 특수한 상황으로 일정 연기가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3개월 연기할 수 있다.”

35. 제45조를 삭제한다.

36.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50조로 한다. “등록상표가 취소, 무효 선고 또는 기간 만료후 갱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소, 무효 선고 또는 말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상표국은 당해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출원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37. 제47조를 제51조로 변경하며, 그중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를 “위법경영 소득액이 5만위안 이상일 경우 위법경영 소득액의 20% 이하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법 소득이 없거나 또는 위법 소득액이 5만위안 미만일 경우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38.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52조로 한다. “미동록상표를 등록상표로 사칭하여 사용하였거나 또는 미등록상표를 사용하여 본 법 제10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이를 제지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위법경영 소득액이 5만위안 이상일 경우 위법경영 소득액의 20% 이하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법경영 소득이 없거나 또는 위법경영 소득액이 5만위안 미만일 경우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9. “본 법 제14조 제5항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10만위안 벌금을 부과한다.”를 신규 추가하여 제53조로 한다.

40.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54조로 한다. “당사자가 상표국의 등록상표 취소 또는 취소 불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표평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평의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내에 결정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일정 연기한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3개월 연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41. 다음의 내용을 신규 추가하여 제55조로 한다. “법정기간이 만료되어도 당사자가 상표국의 등록상표 취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상표평의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해 인민법원에 제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상표 취소 결정, 재심 결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취소된 등록상표는 상표국에서 이를 공고하며 당해 등록상표 전용권은 공고한 날로부터 정지된다.”

42. 제50조를 삭제한다.

43. 제52조를 제57조로 변경하며, (1)호를 분리하여 (1)호, (2)호로 수정하다. “（1）상표 등록자의 허가없이 동일 종류 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였을 경우 （2）상표 등록자의 허가없이 동일 종류 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거나 또는 유사 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쉽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

“고의적으로 타인의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편의를 제공하여 타인이 상표전용권 침해 행위를 실시하도록 도와주었을 경우”를 신규 추가하여 (6)호로 한다.

44. “타인의 등록상표, 미등록한 유명상표를 기업명칭 중의 상호로 사용하여 공중을 오도하고 부당경쟁 행위를 조성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부정당경쟁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를 추가하여 제58조로 한다.

45.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여 제59조로 한다. “등록상표 중에 포함된 동 상품의 통용 명칭, 도안, 유형 또는 상품의 품질, 주요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기타 특징을 직접 표시한 것, 또는 지명에 대하여 등록상표 전용권자는 타인이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삼차원 표식 등록상표 중 포함된 상품 자체의 성격으로 조성한 형태, 기술효과를 얻기 위한 상품 형태 또는 상품에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형태에 대해 등록상표 전용권자는 타인이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상표등록자가 상표등록 출원 이전에 타인이 상표등록자보다 먼저 동일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등록 전용권자는 당해 사용자가 원래 사용범위내에서 계속 당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으나 적당한 구별 표식을 추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6.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60조로 한다. “본 법 제57조에 나열한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행위중 하나에 해당하여 분쟁을 초래하였을 경우 당사자간의 협상으로 해결하며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 미결일 경우 상표 등록자 또는 이해 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수도 있고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처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처리에서 권리 침해 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리 침해 행위를 즉시 정지하도록 명하고 권리 침해 상품과 권리 침해 상품의 제조에 사용하였거나 등록상표 표식을 위조하는데 사용한 도구를 몰수, 소각한다, 동시에 위법경영 소득이 5만위안 이상일 경우 위법경영 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법경영 소득이 없거나 또는 위법경영 소득이 5만위안 미만일 경우 2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5년내에 2회 이상의 상표 전용권 침해 행위를 저질렀거나 또는 기타 엄중한 경위가 존재할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하였거나 당해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증명을 제시할 수 있는 동시에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판매를 정지할 것을 명한다.

상표전용권 침해의 배상액수 관련 쟁의에 대하여 당사자는 처리 책임을 진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조정협의서가 효력을 발생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수 있다.”

47. 제55조를 제62조로 변경하고 제1항 (2)호 중의 “장부” 중문 글자를 수정한다.

“상표 침해 안건 조사처리 과정중에서 상표권 소속에 대해 쟁의가 존재하거나 권리자가 동시에 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출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안건의 조사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 원인 소멸 후 응당 심사 절차를 회복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여 제3항으로 한다.

48. 제56조 1항, 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63조로 한다. “상표전용권 침해의 배상액수는 권리자가 피침해기간에 권리 침해로 입은 실제 손실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 침해자가 침해 기간에 그 권리 침해로 취득한 이익에 따라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권리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상표허가 사용비의 배수로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악의적으로 상표전용권을 침해하였고 경위가 엄중한 경우, 상기 방법으로 확정한 배상액수의 1배 이상 3배 이하로 배상액수를 확정한다. 배상액수에는 권리자가 권리침해 행위의 제지를 위해 지불한 합리한 지출을 포함한다.

인민법원은 배상액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최선을 다하여 증거 제시를 하였으나 권리 침해 행위 관련 장부, 자료를 권리 침해자가 장악하고 있을 경우, 권리 침해자한테 권리 침해 관련 장부, 자료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권리 침해자가 장부,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조작한 장부, 자료를 제공할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권리자가 권리 침해로 입은 실제 손실, 권리 침해자가 침해 기간에 그 권리 침해로 취득한 이익, 등록상표 허가사용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에서 권리 침해 행위의 경위에 따라 300만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한다.”

49.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여 제64조의 1항으로 한다. “등록상표 전용권자가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권리 침해자는 등록상표 전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변을 제출할 경우, 인민법원은 등록상표 전용권자한테 과거 3년내 당해 등록상표를 실제적으로 사용한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등록상표 전용권자가 과거 3년내 당해 등록상표를 실제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한 침해 행위로 인하여 기타 손실을 입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권리 침해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6조 3항을 수정하여 제64조의 2항으로 한다.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하였거나 당해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증명을 제시할 수 있는 동시에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0.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65조로 한다. “상표등록자 또는 이해 관계자가 타인이 그 등록상표 전용권에 대한 침해를 현재 실시하거나 또는 곧 실시하게 되고 만약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의 합법적 권익이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경우 법에 근거하여 소를 제출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재산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51.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66조로 한다. “권리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증거가 멸실될 수 있거나 사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표등록자 또는 이해 관계자는 소를 제출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52. 다음의 내용을 신규 추가하여 제68조로 한다. “상표대리기구가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처분을 주며 1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을 진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주는 동시에 5천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상표 사무 처리 과정 중 위조, 변조 또는 위조 및 변조한 법률문서, 인감, 싸인을 사용한 경우

（2）기타 상표대리기구를 비방하는 등 수단으로 상표대리 업무를 취득하였거나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대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3）본 법 제19조 제3항,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상표대리기구가 전항에서 나열한 행위가 있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신용기록에 기재하며 경위가 엄중한 경우 상표국, 상표평의위원회는 당해 상표대리기구가 처리하는 상표대리업무를 접수하지 않으며 이를 공고한다.

상표대리기구가 성실 신용의 원칙을 위반하고 위탁인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 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상표대리 산업조직은 정관규정에 근거하여 징계를 부여한다.”

53. 제62조를 제71조로 변경하고 그중의 “행정처분”을 “처분”으로 수정한다.

이 결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은 이 결정에 따라 상응하게 수정하고 아울러 조항 순서를 상응하게 조정한 후 다시 공표한다.